##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

2014. 6.30.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## 축산물의 가공기준 引入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

### 1. 개정 이유

규격을 설정하여, 식육가공품 및 유가공품 시장의 활성화를 햄류(가열), 소시지류(가열),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유도하고자 告 を を

기관 "무지방우유류"로 분리하고자 함.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"무지방우유류"가 신설됨에 따라, 「축산물의 가공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25133호, '14.1.31)되어 사다 성분규격」 "저지방우유류"에 포함되어 있는 무지방우유 때 이디

영 암 각 ľΉ "식육즉석판매가공업"이 신설, 시행규칙 제35조, 제51조 (学出出 개정하고자 함 추가하여 동 「축산물 유통기준 준수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, 축산물의 가공기준 제1054호, '13.12.19)」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위생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에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"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"를 제24800호, (13.10.16)<u>의</u> 및 성분규격의 그 시설기준과 뽀 시행규칙 工

(축산물의 수거·검사 등)제1항에 의한 [별표 6] 검사시료의 채취 수거기준과 일치시켜 시료채취 기준을 명확히 함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(검사시료의 채취 등)제1항 및 축산물의 尽

百四里 「식품위생법」 세균발육시험 도모하고자 제7조예 교 다 클로스트리디움 <u>(</u> 「식품의 기준 로타롤포 马大 시험법에 규격」과 일치시켜 사용자의 등재된 뉴

### 2. 주요 내용

- 햄류(가열), 정량 규격 설정[안 제1, 6, 가, (3) (나)] 소시지류(가열), 자연치즈 밎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
- M=100(멸균제품은 n=5, c=0, m=0/25g)으로 설정 m=0/25g을, 햄류(가열), 소시지류(가열)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, n=5, Ă 퍔 를 하 하 고려하여 邻 计科 n=5, c=1, m=10, c=0,
- 쪼 자연치즈, 가공치즈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, n=5, c=0, m=0/25g을, 투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=5, c=2, m=10, M=100으로 空水
- ÷ 무지방우유류 및 마, (4), (7h), 4) 및 V, 1, 가, (1) 및 다, 라~서 (라) 및 제2, 1, 다, 라, 아 및 자, (2), (마) 및 차~서 및 제3, III, 9, 다, (1), (다) 분리 및 개정[안 제, 8, 바 및 제2, 1, 나, (3), (나) IJК (4),
- "저지방우유류"의 무지방우유 축산물가공품 유형, 가공기준, 성분규격 등을 "무지방우유류"로 밎 시험방법 心险 분리하여 \_ 주 작
- 추가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 등이 포함된 "저지방우유류"의 관면 규정에 "무지방우유류"를 다연

# 꾸.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대상 확대[안 제1, 8, 머]

유통기간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宫 대상에 "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"를 마 추가하여 <u>하</u> જ

#### 4 <del>수</del> (1), (라) 및 제3, 皿, 9, 나, (2), (가), (나), (다), (라), (마), (바), (사)] 四人 계취 기준 음 [안 제3, III, 9, 가, (2), (아) 및 제3, 皿, 9, 나,

거량을 개정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일치하도록 원유의 區 채취·수 ¥

## 마. 세균발육시험 시험법 타 [안 제3, III, 9, 라, (3), (4)]

식중독균 용어 개정 신뢰성을 높이고, 「식품의 기준 등의 검사 시료수(5개)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및 규격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관련 검사 결과의

#### 푸. 클로스트리디움 무白롤보 시험법 개정 [안 제3, 皿, 9, 더, (2), <u>F</u>

이루기 위해 개정 시험법에 제시된 배양 온도, 시간을 「식품의 기준 引 규격」과 조화를

## 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축산물위생관리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함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행정예고(공고 제2014-47호, 2014. 2. 26.  $\sim$  2014. 4. 25.)
- 2)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
- 미생물분과(2014. 6. 10.)
- 3) 규제심사 : 비규제 확인(2014. 6. 27.)

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28호

고시합니다 성분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7호, 2014.2.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「축산물 위생관리법,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축산물의 가공기준 山天

2014년 6월 3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

축산물의 가공기준 교 성분규격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, 6, 가, (3), (나), 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상 얨 가열 m=0/25g이어야 한다) 네 略 马K 발효소시지, 자연치즈 및 소시지류: n=5, c=1, m=10, M=100(멸균제품은 및 가공치즈: n=5, c=2, m=10, M=100, n=5, c=0,

제1, 8의 뿌 중 "저지방우유류"를 "저지방우유류, 무지방우유류"로 . 주 다

제1, 8의 모 중 "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(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

내에서 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)"로 한다. 수입자)"를 "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(수입축산

제2, 1 중 "저지방우유류"를 "저지방우유류, 무지방우유류"로

제2, 1, 나, (2)의 (바)를 삭제한다.

, 네, 우유"를 "강화저지방우유 및 환원강화저지방우유"로 한다 제2, 1, 나, (3)의 (나) 중 "강화저지방우유, 강화무지방우유 "환원저지방우유, 고도 환원무지방우유"를 환원강화저지방우유, 환원무지방 "환원저지방우

제2, 1, 다."를 삭제한다 チ (4)의 (라) 에게 단서조항 ĹŢ 무지방우유는 0.5% 이하이어야 ල

なな 제2, 1, 다부터 사까지를 각각 라부터 아까지로 하고,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

다. 무지방우유류

(1) 정의

타민이나 무기질을 字字 감 저지방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.5% 강화한 것을 살뀬 또는 멸균처리한 것, 코伶이 조정한 살균 또는 汉 으의 사 림 旦

지방상태로 401 유산균, 비타민, 무기질을 환원하여 각각 살균 또는 무균적으로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첨가한 것 다 남 유가공품을

# (2) 축산물가공품의 유형

## (가) 무지방우유

다(원유 100%) 원유의 유지방분을 0.5%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交响 면 연

## (나) 환원무지방우유

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) 8% 이상의 것을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한원한 것으로 말한다. 무지유끄형분(탈지

## (다) 강화무지방우유

단, 강화제 제외) 무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火空 말한다(원유 100%,

# (라) 환원강화무지방우유

守存 文字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, 무기질을 강 말한다. 것으로 무지유고형분(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젖) 8% 이상의

# (마)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

제외) 무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(원유 100%, 단, 첨가유산균

#### (3) 가공기준

(가) 무지방우유에 강화제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열안전성과 미생물 (원 1811

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첨가하여야 한다.

(나) 무지방우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なな Ĺħ ₽ 밇 환원무지방우유에 있어서는 환원강화무지방우유에 있어서는 비타민, 무기질을 가할 물 일 일 유유왕 유사한 것을, 강화무지방우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. **-**|> 4

#### (4) 성분규조

(가) 성상 : 유백색~황색의 액체로서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한다.

(나) 비중(15℃): 1.030~1.045

(다) 산도(%): 0.18이하(젖산으로서)

(라) 유지방(%) : 0.5이히

(마) 무지유고형분(%) : 8.0이상

(바) 세균수 : 1ml 당 20,000이하(멸균제품의 외한다) 30°C에서 2주 보관 후 이어야 한다. 단, 유산균 표준평판 배양범에 첨가제품의 字 상수 55°C에서 1주 유산균수를 년 <u>이</u> 査 作 양 <u>¥</u>

(사) 대장균군 : n=5, c=2, m=0, M=10(멸균제품의 小 음성이어야 한다)

(아) 포스파타제 뀬제품에 한한다) . . 음성이어야 한다(저온장시간 살균제품, 고온단시간 살

(자) 유산균수 : 1ml 당 1,000,000이상(단, 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한다)

(5) 시험방법

축산물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.

저지방우유류"를 "원유·우유류·저지방우유류 또는 무지방우유류"로 각각 제2, 1, "아"를 "자"로 하고, 제2, 1, 아, (1) 및 (2)의 (마)중 "원유·우유류 다

제2, 1, 자부터 버까지를 각각 차부터 서까지로 한다.

<u>세</u>3, 田, 9, 가, (2), (아) 중 "약 300g(㎖)이상의 시료"를 "시료"로

제3, Ⅲ, 9, 나, (1), (라) 중 "300㎖"을 "500㎖"로 <u>수</u>

터 (사)까지로 제3, Ⅲ, 9, 나, (2), (가)의 후단을 삭제하고, (나)부터 (바)까지를 각각 (다)부 하고, (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(나) 미생물 정성시험을 ЦŅ 거나 5개 ٦> . 도 도 시료에서 25g(ml)씩 채취하여 섞은(pooling) 125g(ml)을 할 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g(ml)을 검사하

제3, ļш 수 다. Ш, 9, 다, (1), (다) 중 "저지방우유류"를 "저지방우유류, 무지방우유류"

쳌3, Ħ, ڡڕ 巾 oŊ 昭元亭, 메이 이디 "통·병조림, 레토르트 축산물 ٥П 멸균제품"

으로 한다.

<u>꾧</u>3, 균시험"으로 한다. 개봉하지 Ш, 0, 양 卆 용기·포장 그대로 배양기에서 35±1°C"로, "세균발육시험"을 "세 (3) 중 "검사시료를 인큐베이터에서 35.0±1℃″謩 出(人, 5개를

中市 절3, 같이 Ш, 9, 신 살 라, (4)의 약다 제목 "세균발육시험"을 "세균시험"으로 하기, 유무 卆

세균시험은 가온보존시험 이 소 시료에 대해 각각 시험한다

<u>젊</u>3, "225㎡"으로, "세균발육시험"을 "세균시험"으로 Д, ڡ <u>फ</u> (4), (7) 중 "25g(또는 10g)"을 "25g"으로, . 작 구 "225ml(또는 90ml)"

"35.0±1°C"를 "35±1°C"로 "어느 배지에서도"를 "어느 한 배지에서라도"로 ᆁ3, ∄, 9 卆 (4), 6七) 제목 "세균발육시험"을 "시험방법"으로 한다 한고,

ŀπ ≒ū 쳌3, Ш, 9, 수 마, (4), (나), 4) 중 "저지방우유류"를 "저지방우유류, 무지방우유

<u>첶</u>3, ≡, ,0 Î (2), (다), 1) 에게 "35°C에서 18~24시간 배양하고"를 "35~37°C

에서 7일간 배양하고 또"로 한다.

<u>₩</u>3, ∄, . 주 구 وي <u>1</u> (2), (7), 2)중 "35℃에서 48시간"을 "35~37℃에서 48±3시간"

제3, III, 9, 더, (2), (다), 3) 중 "37°C"를 각각 "35~37°C"로 년 <u>무</u>

"③", "④", 쳌3, Ш, 9, "⑤"를 각각 "1군", "2군", "3군", "4군", "5군"으로 더, (2), (다), 4), 시험 중 "37°C"를 "35~37°C"로 하고, <u>구</u>

五.5, "2," <u>제</u>3, Ш, 9, 약 더, (2), (다), 4), 판정 어게 "①", "②", "③", "⑤"을 각각 "1", "2",

<u>체</u>3, 방우유류는"으로 ζ, 7, (1) **한**다. 에게 ·무막, 저지방우유류는"을 "다만, 저지방우유류, 무건

절3, 신설한다 V, 1 중 다부터 버까지를 각각 라부터 서까지로 하고, 다를 다음과 같이

위의 가. 우유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.

다. 무지방우유류

# 부칙 <체2014-128호, 2014. 6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황색포도상구균 규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. 6. 가. (3). (나)의 개정 입한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٦>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중인 사항에 돠